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내용 및 보험료 산정 방법 >

■ '22. 7. 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

구분	실업급여 보험료율		부담 비율 (인상 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 비율)
	인상 전	인상 후	
근로자	16/1,000	18/1,000	사업주와 1/2씩 부담 (근로자 0.9%, 예술인·노무제공자 0.8%)
예술인·노무제공자	14/1,000	16/1,00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0.25% ~ 0.85% (현행유지)

■ 보험료 산정 방법

사업장 구분	대상보험료	보험료 산정 방법
부과고지 사업장	'22. 7. 1. 이후 월별보험료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22. 7. 1. 이후 퇴직정산 보험료 (상실일이 '22.7.1.이후인자)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및 각 기관 사회보험 EDI (KT EDI 포함) 시스템으로 상실신고시 요율 인상 전·후 기간별 실제 보수로 정산 가능하며, 그 외 경로 (서면신고 등)로 신고시 신고편의 등을 위해 근무기간을 요율 인상 전·후('22.7.1.자 기준)로 나누어 기간별 보수총액 일할계산 방식으로 정산
	'22년도 귀속 보수총액 정산보험료 (계속 근무자)	연간보수총액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후 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자진신고 사업장	'22년도 개산·확정보험료	연간보수총액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후 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 보험료율 인상 및 산정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